
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법 제명을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으로 간명화함
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상의 공중이용시설을 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하고,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적용 대상 다중이용시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
-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

II. 검토의견

1.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부착·운영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산일 수정 필요(안 제13조의4)

안 제4조의7에서는 ‘환경부장관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기기를 부착하고, 운영·관리할 것으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안 제13조의4에서는 ‘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부착·관리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개정안의

시행일을 ‘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’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 향후 이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와 시행일을 고려하면 실제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2016년 6월 이후로 예상되므로, 측정기기의 관리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기산일을 “2014년 7월 1일”보다 2년 후인 “2016년 7월 1일”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3조의4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·관리에 대하여 <u>2014년</u>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3조의4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·관리에 대하여 <u>2016년</u>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(매 5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
2.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(대안)과 함께 심사 필요

개정안은 현행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상 ‘공중이용시설’을 이 법에 따른 ‘다중이용시설’에 일원화하여 실내공기질을 총체적으로 관리·규제하려는 것임.

그리고 ‘공중이용시설’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¹⁾이 동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 위하여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

류 중이므로 이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중위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음.

3. 그 밖의 사항

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다음의 경미한 자구수정을 제외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.

해당 조문	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11조의3제2항	라돈지도의 작성기준·작성 방법	라돈지도의 작성기준, 작성방법
제11조의4제1항	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	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²⁾
제12조의4제1항	종합정보망(이하 “정보망”이라 한다)	종합정보망
제2항	정보망을 구축	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
제13조의3 제목	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	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³⁾

(전문위원 강 남 일)

1)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(복지위 대안)은 2014. 4. 23.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의뢰 되어, 2014. 4. 28.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임. 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약간의 조문정리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

2)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순화

3) 표현 통일(법제실무 2015, 808쪽)